

**Q :** 내부회계 평가 업무가 왜 필요한가요? 꼭 해야 하는 건가요?

**A :**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(외감법) 제8조에 따라,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,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, 중과실 위법행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처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경기획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Q :** 제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데 담당자로 지정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**A :** 같은 팀내의 담당자 변경 또는 타 부서 발령에 따른 변경 모두 재경기획팀에 연락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.

**Q :** 변화관리 검토 수행 시 올해 기준으로 통제활동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 증빙이 불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
**A :** 올해 통제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증빙 업데이트가 불가한 경우에는, "작년 기준" 발생한 증빙으로 대체해 주시되 가장 최근 발생한 증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

**Q :** 운영평가 시 결정된 샘플 수를 조정해주시 수 있나요?

**A :** 샘플 수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샘플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 따라서 임의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.

**Q :** 제출한 운영평가 증빙이 반려된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?

**A :** 내부회계시스템 내 '증빙 반려 의견'에서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재경기획팀에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**Q :** 적절한 운영평가 증빙이 맞는지 제출 전에 점검해 주실 수 있나요?

**A :** 적격증빙의 사례는 '참조문서조회' 탭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를 참고하여 동일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 만약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재경기획팀에 연락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[Home >](#)

[Contact Us]  
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주소로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 
 sh.moon@hyundai.com (재경기획팀 문성훈 매니저)

[지난호 보기](#)

본 뉴스레터는 외부감사법 (시행령 제9조) 상 임직원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의무 준수를 위해 발송되었습니다.